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기업대응 방안



(주)켄토피아

임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경과



배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른
일상생활 화학물질 노출
증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국민건강피해 발생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제정 및 시행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환경부 관리체계 수립

화학물질·제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2018.03.20) 및 시행 (2019.01.01)
개정 (2020.03.24)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지속

유해화학물질 사용한
제품의 우려
지속적 발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의 및 해당 품목

생활화학제품 :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종전 위해우려제품 (화평법에서 이관) 혼용중
(종전) 일반소비자들이 주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확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항균·소독제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방역용 소독제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기피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다림질보조제	보존·보존처리 제품	목재용 방부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기존 생활화학제품	식약처 이관제품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지정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적합확인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 필	안전기준 없음 과학원으로 부터 제품 승인 필
염색·도색제품	물체염색제, 물체도색제	신규 제품군	2021년1월1일이 후 제조·수입 하는 제품 부터 적용
자동차전용제품	자동차용워셔액, 자동차용부동액		
인쇄/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인쇄·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눈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규제이행 사항 및 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규제이행 절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고시

제품별 안전기준적합확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표시기준 준수 (라벨)

유통

유효기간 3년
매3년마다 재확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미고시
식약처 이관 품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표시기준 준수 (라벨)

유통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후
살생물제품으로 이관 관리 예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용도:

제조연월:

어는점:

연성:

제조사, 주소, 연락처:

판매자, 주소, 연락처:

제조국명,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

사용방법

①

사용상 주의사항

①

응급처치

①

제품명:

제형:

유통기한:

중량·용량·매수:

표준사용량:

신호어



살생물제 정의 및 규제이행 제외대상

규제 대상 -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정의	사람이나 동물에 직간접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하는 효과를 가진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등이 혼합된 제품, 화학물질 등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등)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 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예시	PHMG, PGH, CMIT/MIT, OIT, 식물추출물 등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동물제거제, 보존제, 수중오염방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방부처리된 가구, 보존제가 함유된 화학제품 등

규제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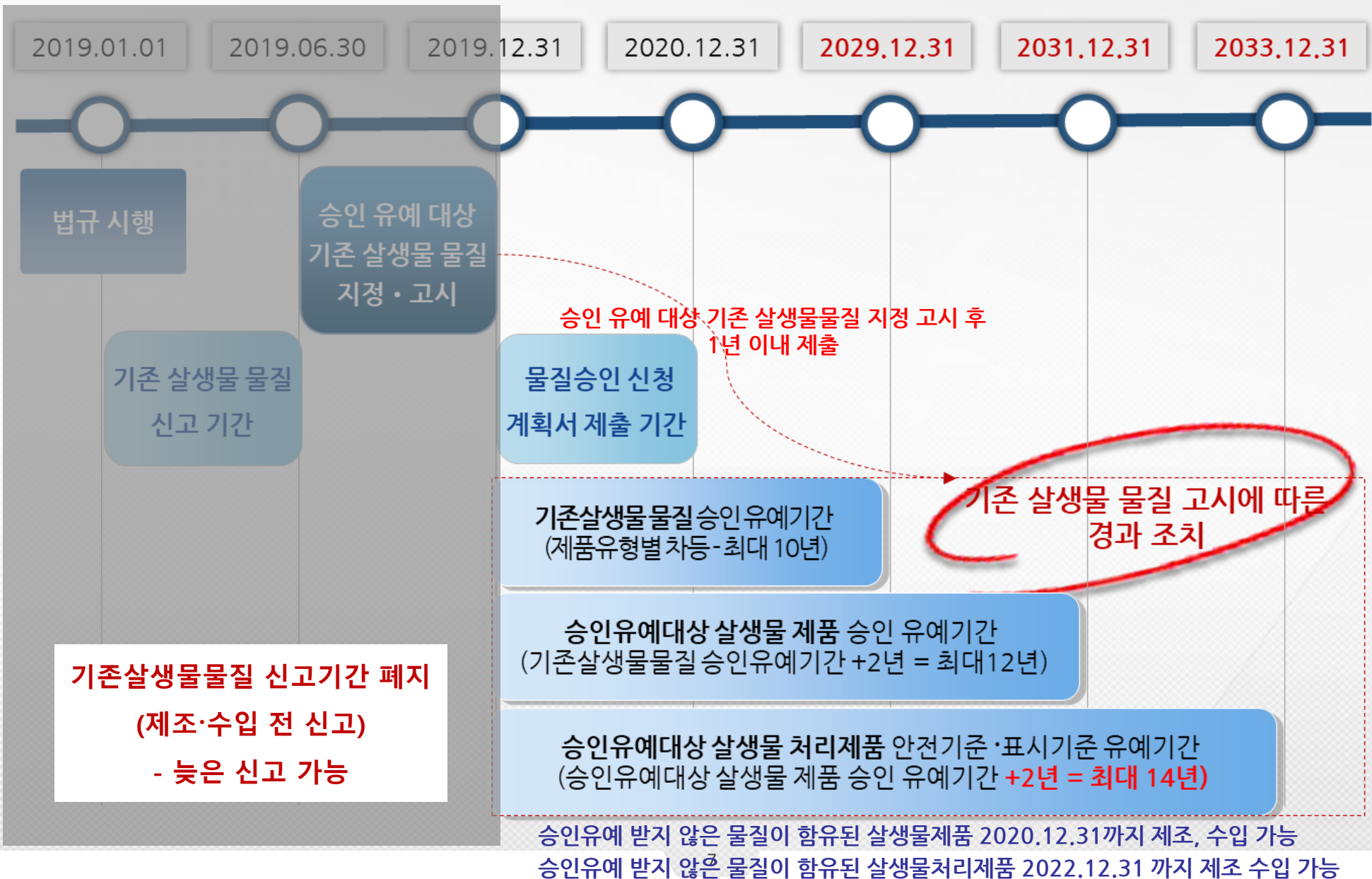
수처리제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처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국방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식품위생법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농약관리법	농림축산 식품부	의약품·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약사법	
단미사료, 보조사료	사료관리법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유해수중생물 처리물질, 생물체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수산부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화장품	화장품법	

살생물제 규제이행 사항 및 절차



위반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혹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살생물제 규제이행 유예기간 및 Timeline



살생물물질 승인 제출자료 및 공동승인 원칙

NO.	제출자료
1	신청인 일반정보
2	물질 식별정보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제품유형정보, 순도범위, 개발경위
3	사용용도 (살생물제품유형 포함) 및 노출 정보
4	안전사용정보, 취급 상의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5	분류, 표시
6	원료, 제조 공정 등
7	국내·외 사용 및 규제 정보
8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물리적 위험성, 용기반응성 포함)
9	인체, 동물 유해성 정보
10	환경에 대한 유해성정보, 환경거동 및 동태
11	인체, 동물 및 환경 위해성 정보 (평가결과)
12	효과 효능
13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종합평가자료)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법 제19조 제4항〉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
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
자료 중 1, 6의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 노출로 손실초래 예상
2. 공동제출 시 더 많은 비용 소요
3. 분류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4. 제출자 간 의견이 다른 경우

환경부장관 확인 후 개별제출

살생물물질 vs 살생물제품 승인

항목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이행주체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 제조 수입하려는 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
성분분석	주성분+불순물	제품 내 함유된 성분, 배합비율
노출 및 안전사용정보	용도, 제품 내 사용용도, 사용자범위 취급주의사항, 폐기방법	제품의 용도, 사용 대상자 및 범위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유통기한
분류·표시 및 포장	시험자료에 따른 분류 및 표시 하위사용자에 공통적용 사항	제품의 유해성 구분에 따른 표시 효능, 사용량, 용법, 주의사항 포장정보
원료, 공정	원료, 공정	원료, 공정, 제조 및 보관시설 설치 운영계획 또는 현황
물리·화학적 특성	물질특성 (끓는점, 증기압, 안정성 등) 포장용기와의 반응성 등	제품의 물리적특성 포장용기와의 반응성 등
유해성	급성, 반복독성, 발암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독성동태, 내분비계장애 등	급성독성 등, 살생물물질 이외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 정보
생태영향 및 환경 거동/동태	환경에 대한 유해성 자료 (수생생물, 저서생물, 육생생물, 축적성 등) 환경매체 내 거동 및 동태 자료	추가정보 및 제품 생태독성 정보 환경배출 추정치
효과·효능	물질 용도를 고려한 효과효능 자료	제품별 표시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위해성평가	제품용도 고려	살생물물질+그 외의 성분

살생물제품 유형 별 승인유예기간 및 승인절차

유형별 승인 유예기간



살생물물질 승인절차



감사합니다

